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징수
등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률에서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일을 '2025
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'로 위임함에
따라 납부증명서 시행일을 '27. 1. 1.로 지정하며 이에 따라 납부증명서
제출제도 관련 조문의 시행일도 '27. 1. 1.로 조정하고자 함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입법예고 전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대통령령 제30545호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 중 “2025년 1월 1일”을 “2027년 1월 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관한 규정)

① 법률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5호, 제2조 및 제3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.

1. 법률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5호 : 2027년 1월 1일
2. 법률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: 2026년 12월 31일
3. 법률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

개정법률 부칙 제3조 : 2027년 1월 1일

- ② 법률 제19233호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”이란 2027년 1월 1일을 말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대통령령 제30545호 지방행정제 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부칙	대통령령 제30545호 지방행정제 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의7 부터 제5조의11까지의 개정규 정은 <u>2025년 1월 1일</u> 부터 시행 한다.	제1조(시행일) ----- -----. ----- --- <u>2027년 1월 1일</u> ----- 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880